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15호 2012. 10. 15.(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8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2차)) ...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82호(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경미한 사항 변경)) 2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83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9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72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고 제2012-1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2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선학공원 등 36개 연수구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2년 10월 9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번호	공원명	위 치	비고	번호	대상	위 치	비고
1	청은	동춘동 917-1		19	늘봄	연수동 603	
2	부수지	동춘동 925-4		20	솔안	연수동 634-2	
3	동막	동춘동 932-2		21	연수체육	연수동 636	
4	봉제	동춘동 940-1		22	능허대	옥련동 195-54	
5	동남	동춘동 943-1		23	한진	옥련동 417-5	
6	학	선학동 346		24	옥련	옥련동 644-5	
7	승기	선학동 348		25	청룡	옥련동 산63-2	
8	선학	선학동 359		26	시대	청학동 451-1	
9	두리	선학동 365-2		27	하나	청학동 465-1	
10	선유	선학동 391		28	용담	청학동 467	
11	느티나	선학동 403-14		29	청학	청학동 501	
12	원도장	선학동 409-5		30	안골	청학동 530-9	
13	마리	연수동 514		31	중앙	청학동 546-13	
14	문남	연수동 541-2		32	터널	청학동 551-5	
15	일단지	연수동 544-9		33	백제우	청학동 554-1	
16	문화	연수동 578		34	향나무	청학동 559-2	
17	대학	연수동 580		35	승정	청학동 564-1	
18	솔밭	연수동 582-1		36	솔샘	청학동 570-1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41호(2009.11.09)로 지정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11호(2011.04.21)로 지정(경미한사항 변경)한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032-810-77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8,548.0	-	8,548.0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548.0	-	8,54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548.0	-	8,548.0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2	144	15~18	국지 도로	282(43)	광로3-6	대로3-40	일반 도로	-	1991.7.15	-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34(9)	대로2-14	중로2-144	일반 도로	-	1991.7.15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90.0	-	90.0	2009.11.09	무상 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360.0	증) 35.0	395.0	2009.11.09	무상 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공원	- 변경 - 면적 : 360.0m²→395.0m²	세대수 증가계획을 위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 확보면적 기준(사업면적 30,000m²이하인 구역은 1세대당 2m²이상 확보)에 적합한 공원계획 수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옥련대진빌라 주변구역	8,548.0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40	-	-	40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 적(㎡)							
변경	옥련대진 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548.0	1-1 (공동주택)	기정	7,96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30% 이하	78m이하		
			변경	7,932.0							
			1-2 (주차장)	90.0			주차장	-	-	-	
			1-1 (공동주택)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2 (주차장)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1-1	중로2-144, 소로2-11호선변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 대지경계선변		폭 3m지정				
				1-2	소로2-11호선변		폭 3m지정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20.36%)+지하주차장 확보(10.0%)+탑상형아파트 건립(5.0%)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환경보전 계획	☐ 토양포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물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 우수유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먼지 - 공사 건물과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설시 및 차량 진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공사 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재난방지 계획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처리방안 계획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남측 옥련중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200m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및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학습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구분	획지 번호	위치	면적(㎡)	
1-1	1	8,548.0	기정	1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7,96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	"	7,932.0	"
1-2			기정	2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90.0	주 차 장
1-3			기정	3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360.0	소 공 원
			변경	3	"	395.0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상습침수구역 현황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 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	
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1-1, 1-2	대지 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에는 가로 녹화, 가로 및 지구의 경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 및 시설을 정할 수 있음 ·대지안의 조경은 도로변으로 이격거리를 통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함	
		전면 공지	·남측 소로2-11호선변 폭 2m를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인도로 식별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②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1-1, 1-2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지정 ·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③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 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④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교육 재정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10.1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주차장)의 결정(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4번지 일원(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연수구 청학동 504번지 일원	2,711	증)27.5	2,738.5	2011. 7.18	노외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신설 ⇒ 위치 : 연수구 청학동 504일원 면적 : (당초) 2,711㎡ (변경) 2,738.5㎡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시설결정면적 확정

※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등 기타사항 : 생략(변경없음)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810-74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청학동 50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2,73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3.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별첨] 용지조서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름	주소	
1	청학동	151-1	전	447	447	최춘식	인천 연수구 청학동 161	
2	청학동	151-5	전	61	6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3	청학동	151-9	도	5	5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4	청학동	151-14	철	508	508	국토해양부		
5	청학동	169-1	임	236	236	인천시 연수구		
6	청학동	169-3	철	231	231	국토해양부		
7	청학동	169-4	임	43	43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8	청학동	169-5	도	2	2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9	청학동	170	임	18	18	인천시 연수구		
10	청학동	171-1	전	165	165	인천시 연수구		
11	청학동	171-4	철	284	284	국토해양부		
12	청학동	171-5	대	155	155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13	청학동	172-17	대	21	21	최용숙	대전 중구 문화동 1-35 계룡아파트 나동 305호	
14	청학동	173-1	전	114	114	인천시 연수구		
15	청학동	173-3	전	65	65	최용숙	서울 구로구 개봉동 60-82 거성2차 푸르피아파트 203동 1302호	
16	청학동	174	전	33	33	인천시 연수구		
17	청학동	441	도	91	91	국토해양부		
18	청학동	504-7	잡	259.5	259.5	인천시 연수구		
합 계				2,738.5	2,738.5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 11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9조의3 ⇒ 동법시행령 제12조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 개정 (안 제3조)
 - 장애인복지위원을 15명이내 ⇒ 30명 이내로 개정

-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 4조)
 - 공무원에 대한 임기 :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 해촉 후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임기 : 전임자의 남은 임기내
-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함 (안제 9조)
 -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31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810-7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290, FAX 810-730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하고, 같은조 “제9조의3”을 “제12조”로 한다.

제3조중 “1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①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조 ----- 제12조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30인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7조)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44
------	------

발의연월일 : 2012. 10. 10.

발 의 자 : 장현희의원, 황용운의원

이창환의원, 김성해의원(4인)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7조)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담당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8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된 연수구여성발전위원회가 대

행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